
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자 여러분

해외이주·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·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
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자 여러분

해외이주·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
해외이주·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



해외유학생 신고 및 상환의무

해외이주자 신고 및 상환의무

신고의무

- ▶ 해외로 유학하려는 체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

신고대상

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·기술을 연구(연수)하는 것

증빙서류

본인의 이름과 유학기간이 표시된 공적기관 발급 서류

PC

학자금대출 » 학자금뱅크 »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» 해외이주/유학신고

모바일 앱

서비스 » 학자금대출 » 해외이주/유학신고 » 신고하기

- ▶ 유학계획변경 신고 |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

- ▶ 귀국신고 | 유학 종료 후 귀국 즉시 재단 홈페이지(앱)를 통해 신고
(출입국증명서 업로드)

※ 귀국신고를 완료해주셔야 기록된 보증인이 해제처리되며, 전액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됨

상환의무

- ▶ 유학 신고 완료한 해외유학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CL)의 상환방식 유지

체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
(‘22년 귀속 상환기준소득: 1,510만원 / 총급여기준 2,394만원)

- ▶ 학업종료 예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하지 않을 경우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CL) 전액상환 의무부과

신고의무

- ▶ 해외로 이주하려는 체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‘전액상환’ 또는 ‘보증인 임보 후 분할상환약정’ 체결

PC

학자금대출 » 학자금뱅크 »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» 해외이주/유학신고

모바일 앱

서비스 » 학자금대출 » 해외이주/유학신고 » 신고하기

상환의무

- ▶ 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

PC

학자금대출 » 학자금뱅크 »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» 중도상환 » 전액상환

- ▶ [전액상환불가시] 보증인 임보 후 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

보증인 임보방법

‘연대보증 신청서’(보증인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요) 및 ‘증빙서류’(보증인 “본인서명사실확인서” 또는 “인감증명서”, 보증인 신분증 사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)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지역센터에 방문

※ 보증인이 직접 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) 불필요(단, 신분증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필수)

※ 신청서 양식: 재단 홈페이지 » 고객센터 » 자료실 » 게시글
“해외이주/유학신고에 따른 연대보증인 임보 양식”
(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수 증빙자료 확인)

(PC) 분할상환 전환약정

학자금대출 » 학자금뱅크 » 학자금대출 상환
▶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전환약정 신청